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 575 호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제출일자 : 2019년 3월 29일

라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03일

2. 제안이유

- 한시기구 정비를 통해 시정 핵심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함.

- 지역발전본부(~'20.6.30.) : 4대 권역별 균형발전 총괄
- 문화시설추진단(~'20.8.18.) :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 전담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‘지역발전본부’와 ‘문화시설추진단’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간 연장하여 문화·균형발전 분야의 시정운영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나.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(안 부칙 제2조)

- 한시기구는 긴급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한 사업종료 시점까지 실시·운영하는 예외적인 기구운영 방식으로, 최초 3년간의 범위에서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하고 1회(3년간)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(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) 【참고자료 1】.
- 현재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본부, 문화시설추진단, 남북협력추진단 등 모두 3개의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음.

〈 서울시 한시지구 운영 현황 〉

부서명	존속기한	주요업무
지역발전본부	2016.07.01~2019.06.30	서울의 성장 동력 육성과 신경제 중심지 조성
문화시설추진단	2016.08.19~2019.08.18	문화 향유권 회복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
남북협력추진단	2018.11.01~2019.10.31	서울-평양 도시교류를 통해 통일기반 조성을 강화하고 민간·정부·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

- 이 중 올해 6월과 8월에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에 대해 1년 단위의 연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서울시는 권역별 경제중심지 조성과 문화시설 건립 확대 등을 추진할 전담조직 필요성을 이유로 이들 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을 요청해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음.¹⁾
-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은 2016년 기구 신설 이후 1년 단위로 3차례 존속기한을 연장했으며, 이번 1회 연장(3년 단위)으로 최대 2022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다. 한시기구의 연장 필요성 검토

- 그동안 ‘지역발전본부’는 4개 권역(동남, 동북, 서남, 서북권)을 중심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, 창동·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격차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, ‘문화시설추진단’은 40여개의 박물관·미술관·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각 시설간의 연계·

1)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2개 한시지구 존속기한을 3년 연장 요청했으나, 행정안전부는 한시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‘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’(2016.3월)에 따라 ‘1년 단위’(필요시 3년 까지)로 협의를 하고 있음. [참고자료2]

통합하는 총괄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어, 일관성·체계성·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구 준치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음.

- ‘지역발전본부’는 서울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, 신경제 중심지 조성 등 2025년까지 총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- ▷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종합적 도시관리방안 마련(~ '21.4)
- ▷ 서울아레나 건립 및 창업·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본격 추진(~ '25년)
- ▷ 마곡 융복합 R&D 단지 조성 등 서남권 혁신 거점기반 완성(~ '30년)
- ▷ 서북권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조성('19년~)

- ‘문화시설추진반’은 2023년까지 11개 박물관·미술관 신설, 2025년까지 29개 문화시설 건립(자치구 문화시설 확충 10개소 포함) 등 박물관·미술관 개관에 따른 체계적인 전시·운영계획 수립과 시행, 자치구 문화시설 건립 지원 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음.

- 다만,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치·운영하는 한시기구로는 이들 사업의 연속성·체계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음.
- 특히, ‘지역발전본부’와 ‘문화시설추진단’의 사업완료 시점이 각각 2030년, 2025년 이상 지속될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, 매년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정규기구로의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.

- 한편, 이들 한시기구 3개를 포함하여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시장방침으로 정규기구처럼 설치·운영하고 있는 6개의 임시 법외기구²⁾에 대해서도 사업의 합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.

2) 시장방침으로 설치된 임시 법외기구 : 국제협력관(2013.12.02), 복지기획관(2014.07.04), 보행친화기획관(2010. 08.16), 대기기획관(2011.11.29), 재생정책기획관(2012.09.28), 주거사업기획관(2011.11.29)

【참고자료 1】

관 련 법 령

▣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21조(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임 협의)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(장과 보조·보좌기관을 포함한다)의 직급이 시·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, 시·군·구에서는 5급 이상(제13조제1항에 따라 실·국을 둘 수 있는 시·군·구는 4급 이상을 말한다)인 경우에는 미리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6조(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,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【참고자료 2】



행정안전부



수신 서울특별시시장(조직담당관)

(경유)

제목 한시기구 연장 협의 결과 통보

1.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-2818(2019.3.6.)호와 관련됩니다.
2. 위 호와 관련,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, 기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협의개요

자치단체명	한시기구명	부서장 직급	요청기한	비고
서울	지역발전본부	3급	'19.7.1.~'22.6.30.(3년)	3차 연장
	문화시설추진단	3급	'19.8.19.~'22.8.18.(3년)	3차 연장

나. 검토결과 :수정 승인(1년 승인)

자치단체명	한시기구명	승인기한
서울	지역발전본부	'19.7.1.~'20.6.30. (1년)
	문화시설추진단	'19.8.19.~'20.8.18. (1년)

끝.

전문위원	연락처
주우철	02) 2180-8054